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0. . .	
연월일	(제 회)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령군수 (기업경제과장)
제출연월일	2020. . .

법무규제개혁담당 심사필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를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6장에 제26조, 제33조, 제34조의2 및 제3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 절차를 거친다.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 절차를 거친다.

제34조의2(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갱신횟수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조건은 군수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건은 군수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9조의2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절차)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인적사항, 권리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의 내용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중 “군수가부과·징수한다”를 “군수가 부과·징수하며,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로 한다.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7. (생 략)</p> <p>8. “소규모 상가”라 함은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20개 이상인 곳으로서 「<u>유통산업발전법</u>」 제2조제6호의 상점가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상가를 말한다.</p> <p>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 ----- 「<u>유통산업발전법</u>」 제2조제7호----- ----- -.</p> <p>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26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 절차를 거친다.</u></p> <p><u>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u></p>

<신 설>

<신 설>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 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

청문 절차를 거친다.

제34조의2(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갱신 횟수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조건은 군수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건은 군수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인적사항, 권리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의 내용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

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41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의한다.

제4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3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군수가 부과·징수하며,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4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

<삭 제>

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74조제3
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
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군수는 별지 제4호서
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한
다.

제45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

<삭 제>

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외에는 「고령군세 부과징
수 규칙」을 준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기업경제과	
연 락 처	(054) 950-6562